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 (GSTC)

관광업체용 GSTC 기준

버전 3, 2015년 12월 21일
성과지표 포함

전문

‘지속가능관광’ 업계 전반의 공통된 이해를 도모하고자 국제지속가능관광위원회(GSTC: Global Sustainable Tourism Council) 기준을 수립했으며, 이는 모든 관광업체가 추구해야 할 최소 기준치입니다. 효과적인 지속가능성 계획 수립,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편익 극대화, 문화유산 확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감소 등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수립한 본 기준을 관광업 전반에 적용합니다.

세계지속가능성기준연합(ISEAL Alliance)은 전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 개발을 위한 국제표준 가이드를 제공하는 기구로, ISEAL연합의 기준설정 강령에 따라 본 기준을 개발 및 개정했으며 기준은 3~5년 단위로 개정됩니다. 개정계획을 확인하고 향후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려면 www.gstcouncil.org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개발 프로세스 및 이력 정보 역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속가능성 증명의 근거
-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체가 더욱 더 지속가능한 사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사업체가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지원
- 여행객과 여행사가 공급업체 및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여 성장중인 지속가능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
- 고객이 건전한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 및 사업체를 선택하도록 지원
- 정보매체가 지속가능관광 제공업체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하는 공통분모
- 인증 및 기타 자발적 프로그램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
- 지속가능관광 요건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비정부, 민간 프로그램에 출발점을 제시
- 호텔학교와 대학 등 교육 및 연수기관을 위한 기본지침 제공
- 리더십을 발휘하여 행동 촉구

본 기준은 목표 달성 방법 또는 달성 여부가 아닌 목표 자체를 제시합니다. 이는 GSTC 기준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성과지표, 관련 교육자료, 실행도구 접근성을 통해 제시됩니다.

기준 적용

정당한 사유로 인해 기준 적용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준을 가능한 온전히 적용하도록 권고합니다. 관광지역의 규제, 환경, 사회, 경제 또는 문화 여건 상, 관광상품에 기준을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 경제, 환경의 규모가 작은 지역 공동체가 소유한 소규모 관광사업은 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기준에 대한 추가 지침은 GSTC가 발행한 지원지표(supporting indicators), 용어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지표

본 성과지표는 관광업체의 GSTC 기준 준수 측정을 돋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본 지표의 초안은 신규 정보를 반영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신규 지표 또는 기타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accreditation@gstcouncil.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지표 및 기준

본 문서는 통합된 기준 및 성과지표를 설명합니다.

GSTC 산업기준	관광업체용 지표
섹션A: 지속가능한 관리에 대한 효율성 입증	
A1 지속가능성 관리시스템 조직은 그 규모, 활동범위에 적합한 장기적인 지속가능 관리시스템을 구현하여 환경, 사회, 문화, 경제, 품질, 인권, 건강, 안전, 리스크, 위기관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적 개선을 모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a. 지속가능성관리(SM: Sustainability Management) 시스템을 명확하게 문서화했다.b. SM 시스템을 통해 환경, 사회, 문화, 경제, 품질, 인권, 건강, 안전 문제 등을 처리한다.c. SM 시스템은 리스크 및 위기관리를 고려한다.d. 증빙문서를 통해 SM 시스템을 구현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e. SM 시스템은 지속가능성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 는지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A2 법규 준수 조직은 무엇보다도 건강, 안전, 노동, 환경적 측면을 포함해 관련된 일체의 지방정부, 중앙정부, 국제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한다.	a. 일체의 해당 법적 요건 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한다. b. 증명서 및 기타 증빙문서는 일체의 해당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c.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의 법적 요건을 이해하고 충족한다.
A3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직의 지속가능성 정책, 조치, 성과 등을 보고한다.	a. 지속가능성 성과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b. 지속가능성 정책과 조치를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통해 보고한다. c. 소비자와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커뮤니케이션에 포함한다.
A4 임직원 참여 임직원은 지속가능성 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현에 참여하고, 시스템 운영에 있어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안내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받는다.	a. SM 시스템에 임직원이 참여함을 입증할 수 있다. b. 참석자 수준을 고려한 연수코스 및 실무연수(OJT)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c. 접근 가능한 형식(필요시 소수 언어사용 참여자 배려 포함)으로 임직원 연수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d. 임직원이 관련 훈련/기술 증명서와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A5 고객 경험 지속가능성 측면을 포함한 고객만족을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를 취한다.	a. 고객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고 피드백 결과를 분석한다. b. 부정적 피드백과 반응을 기록한다. c. 시정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 d. 고객 피드백을 관광업체와 계약/방문 관광지에 제공 한다.
A6 명확한 홍보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조직 및 조직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자료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제공할 수 없는 사항을 약속하지 않는다.	a. 실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체험과 고객이 방문하는 장소의 이미지를 홍보에 사용한다. b. 마케팅 시, 관람을 보장할 수 없는 야생동식물 또는 문화행사를 약속하지 않는다. c.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과거의 성과 기록을 근거로 작성한다.
A7 건물과 기반시설 건물과 기반시설 기획, 부지선정, 설계, 건설, 개조, 운영, 철거...	A7 기준의 지표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건물과 기반시설 또는 조직이 직접적인 영향/통제를 행사하는 건물과 기반시설에 적용된다.
A7.1 요건과 법규의 준수 ...보호대상 및 취약 지역, 유산지정 고려지역과 관련해	a. 해당지역의 토지이용 및 활동 관련 법규를 인지 및 준수함을 입증한다.

<p>지대설정 요건 및 법규를 준수한다.</p>	<p>b. 일체의 면허 및 허가 요건을 최신으로 유지한다. c. 법에 명시되지 않은 구역관리계획과 안내(예: 특별지구, 설계 등)를 인지 및 준수함을 입증한다.</p>
<p>A7.2 영향 및 온전성</p> <p>...자연·문화적 주변환경의 여력과 온전성을 고려한다.</p>	<p>a. 장소선정, 설계, 접근성에 있어 쾌적한 시야확보, 경관, 문화 및 자연유산을 고려했다. b. 장소선정, 설계, 접근성에 있어 생물학적 취약지역과 생태계 동화능력을 고려했다. c. 고고학유산, 문화유산, 종교 성지를 온전하게 보전했다. d. 자연지역과 보호지역의 온전성과 연결성을 보전했다. e.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종의 서식지 이탈을 야기하지 않았고, 야생동식물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경감했다. f. 수로/집수지/습지를 변형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서 지표수 유출량을 감소시켰다. 잔여수를 채집하거나 수로로 보내 여과했다. g. 리스크요인(기후변화, 자연현상, 방문객 안전 포함)을 평가해 해결했다. h. 영향평가(누적영향 포함)를 실시해 적절하게 문서화 했다.</p>
<p>A7.3 지속가능한 방식과 재료</p> <p>...해당 지역에 적합하면서 지속가능한 방법과 재료를 사용 한다.</p>	<p>a. 실행가능하고 적합한 경우, 건물과 설계에 해당 지역의 재료, 방식, 기술을 적용했다. b. 외래종 대신 지속가능한 출처에서 확보한 재래종 및 토착종 식물을 조경, 장식 등에 사용했다. c. 해당지역의 일반적인 혹은 예상되는 환경조건에 대한 내성을 고려해 식물(예: 가뭄 내성이 있는 식물)을 선택했다. d. 가능한 경우 적합한 증명이 있는 지속가능한 설계, 재료, 건축방식을 건물에 적용했다. e. 환경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건설페기물을 분류 및 처리한다.</p>
<p>A7.4 열린 접근성</p> <p>...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접근성과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한다.</p>	<p>a. 운영 성격에 따라 신체장애인 및 기타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관광지, 건물,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b. 접근성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공 한다. c. 관련 전문가/사용단체가 접근성을 인증하고 확인한다.</p>

A8 대지권, 용수권 및 재산권 <p>조직의 대지권, 용수권, 재산권 취득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주민과 원주민은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 취득에 앞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동의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비자발적인 재정착을 요구받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관광지 또는 조직이 직접적인 영향/통제를 행사하는 곳의 토지소유권 및 점유권을 문서화한다. b. 대지 및 용수를 포함한 핵심자원의 사용자 및 접근권을 문서화한다. c. 지역 및 원주민 공동체와의 커뮤니케이션, 협의, 참여를 증빙문서로 입증한다. d. 지역주민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권리 취득에 앞서 자발적으로 동의를 제공했다는 증거(비자발적 이주 또는 대지 취득이 없음을 입증)를 문서화한다.
A9 정보와 해설 <p>조직은 자연지역, 생활문화, 문화유산구역 방문 시 적절한 행동을 설명하고, 주변의 자연환경, 지역문화,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와 해설을 제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방문지역의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정보/해설 자료를 작성해 고객에게 제공한다. b. 임직원에게 방문지역의 자연·문화유산에 대한 정보 및 연수를 제공한다. c. 관광지 방문 시 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A10 관광지 참여 <p>기회가 있을 경우 조직은 관광지의 지속가능관광 기획 및 관리에 참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조직은 조직운영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의 지역관광관리기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구와 접촉한다. b. 조직은 조직운영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에서 지속 가능관광기획 및 관리에 참여한다.

섹션B: 지역주민의 사회, 경제적 편의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

B1 지역사회 지원 <p>조직은 지역기반시설 및 사회공동체개발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원한다. 이 이니셔티브에는 교육, 연수, 건강, 위생 그리고 기후변화 영향 해결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조직은 조직운영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의 지역공동체 이니셔티브를 지원한다. b. 지역공동체 계획에 대한 기여 정도 및 성격을 기록으로 남긴다. c. 서비스공급업체 및 프로그램 구성 상품/체험 선정 시, 조직은 지역공동체에 참여하고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B2 지역주민 취업 <p>취업과 승진(관리직 포함)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조직은 조직운영 및 활동을 함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b. 조직이 지역주민에게 제공한 취업 수준 및 비율을 모니터링한다. c. 취업기회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연수를 제공한다. d. 서비스공급업체 및 프로그램 구성 상품/체험 선정

	시, 지역주민을 채용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B3 지역사회 구매 상품·서비스 구입 및 제공 시, 가능하다면 그리고 품질이 만족스러운 경우 조직은 지역의 공정무역 공급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a. 조직은 상품·서비스 공급원을 정기적으로 감사한다. b. 서비스공급업체 및 프로그램 구성 상품/체험 선정 시, 조직은 지역주민이 소유 및 운영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B4 지역사회 기업인 조직은 해당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상품·서비스의 개발과 판매에 있어 지역사회의 기업인을 지원한다.	a. 조직은 조직과 함께 일하는 해당지역의 서비스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서비스 품질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한다. b. 지역사회 기업인과의 협작사업 및 동업 기회를 적절히 고려하여 추진한다.
B5 착취와 폭력 조직은 특히 어린이, 청소년, 여성, 소수자, 기타 취약집단에 대한 상업적, 성적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착취나 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a. 조직은 취약집단의 착취와 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문서화했다. b. 정책을 전달하고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c. 조직은 조직운영이 특별히 활발한 관광지에서 지역공동체와 함께 착취와 폭력에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한다. d. 직원연령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여(국제노동기구의 정의에 따른)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한다. e. 조직은 아동 성관광 금지 조치를 지원한다. f. 착취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자 및 장소와는 계약을 하지 않거나 방문하지 않는다.
B6 기회의 균등 조직은 성별, 인종, 종교, 장애 혹은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차별이 없는 고용기회(관리직 포함)를 제공한다.	a. 조직이 여성과 지역공동체의 소수집단 등 차별위험에 처한 집단을 파악했다. b. 각 집단에 속하는 직원비율을 모니터링한다. c. 내부승진에 해당 집단 구성원을 포함한다.
B7 양질의 일자리 노동권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최소 생계비 이상을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다. 직원에게 연수, 체험, 승진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a. 조직이 국제노동기준과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함을 입증한다. b. 임금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고용국가의 표준생활임금과 비교해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c. 전체 임직원 연수기록을 보존하여 임직원에게 제공한 연수 수준 및 빈도를 제시한다. d. 고용계약서에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을 지원함을 명

	<p>시한다.</p> <p>e. 모든 현장근로자에게 용수 및 위생시설을 제공한다.</p> <p>f. 직원만족도를 모니터링한다.</p> <p>g.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p>
B8 지역사회의 서비스	<p>a. 조직은 주요 운영/방문지역의 지역 서비스 가용성에 조직이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한다.</p> <p>b. 조직의 주요 운영/방문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피드백/고충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p> <p>c. 조직의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기본서비스 가용성이 축소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이를 해결한다.</p>
B9 지역주민의 생활	<p>a. 개발과 운영에 대한 결정 시 지역주민의 생활 접근성을 고려한다.</p> <p>b. 조직의 주요 운영/방문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생활 접근성이 축소된 경우, 지역주민이 이를 보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p>

섹션C: 문화유산에 대한 편의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

C1 문화적 상호작용	<p>a. 관광객의 문화지역 및 원주민 공동체 방문을 위해 조직은 국제, 국내, 해당지역의 현행 모범관행 및 지도 내용을 인지하고 준수한다.</p> <p>b. 필요한 경우 조직은 지역공동체/관광지와 함께 지도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지침을 수립하고 합의하는데 참여한다.</p> <p>c. 지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전달한다.</p> <p>d. 아동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조치를 실행하고 있다.</p> <p>e. 조직은 해당지역의 가이드를 교육 및 활용하는데 참여하며, 이를 지원한다.</p> <p>f. 단체방문객의 규모, 빈도, 시기를 결정할 때, 관광지의 여력과 취약성, 그리고 관광지에 가해지는 부담의 정도를 고려한다.</p> <p>g.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피드백을 적극 수렴하여 조치 한다.</p>
-------------	---

<p>C2 문화유산의 보호</p> <p>조직은 역사적, 고고학적, 문화적, 종교적 의미가 있는 지역공동체의 재산, 관광지, 전통을 보호, 보전,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조직은 조직의 주요 운영/방문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분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기록한다. b. 조직은 조직의 주요 운영/방문 지역의 문화유산을 위해 현물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c. 조직의 활동이 지역주민의 관광지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p>C3 문화와 유산의 반영</p> <p>조직은 지역공동체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한편, 지역의 전통 및 현대문화의 정통적인 요소를 소중하게 여기고 조직운영, 설계, 장식, 음식, 매장 등에 이를 반영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해당지역의 전통적인 문화 및 유산을 방문지역과 체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b. 제공하는 음식, 소매점, 행사, 기타 서비스 등에 생활문화유산, 전통을 반영한다. c.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을 준수하고 필요한 허가를 인가 받았다. d. 지역문화유산 공개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구했다.
<p>C4 유물</p> <p>국내 및 국제법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역사 및 고고학 유물을 판매, 거래, 전시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모든 유물의 이용은 투명해야 하고/또는 이를 문서화하여 보고한다. b. 유물 이용 시, 이를 허용하는 법규와 내규가 있음을 확인했다. c. 방문객이 유물을 제거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섹션D: 환경에 대한 편익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

D1 자원 보전

<p>D1.1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구매</p> <p>구매 정책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급업체와 상품(자본재, 식음료, 건축자재, 소비재 등 포함)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환경적 구매정책을 문서화했다. b. 환경인증을 받은(특히 목재, 용지, 생선, 기타 음식, 자연에서 얻은 제품 등에 있어) 제품과 공급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c. 인증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원산지와 재배·생산 방식을 고려한다. d. 멀종위기종을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 e. 가능한 경우 환경/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은 서비스공급 업체와 관광업체를 투어에 선택해 포함시킨다. f. 인증사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제공업체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고려하고 인증에 요구되는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실행한다.
--	--

D1.2 효율적 구매 <p>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조직은 음식물을 비롯한 소모품과 일회용품 구매를 신중하게 관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재사용, 공용기 환불,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해 구매한다. b. 소모품과 일회용품 구매 및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c. 불필요한 포장(특히 플라스틱 성분)을 피하고 적절한 대용량 포장을 구입한다.
D1.3 에너지 절약 <p>유형별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하고 전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조직은 조직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고자 노력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조직운영 그리고 조직이 직접적인 영향/통제를 행사하는 곳의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b. 재생에너지원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전체 에너지 공급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c.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장비와 방식을 이용한다. d.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했다. e. 임직원과 관광객에게 에너지 사용 최소화에 대해 안내한다.
D1.4 용수 보전 <p>물 리스크를 평가하고, 유형별 물 사용량을 측정하여 전체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용수확보는 지속 가능해야 하며 환경흐름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물 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경우 지역상황을 반영한 용수관리 목표를 파악하여 시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주요 방문지역의 물 리스크를 평가하고 문서화한다. b. 물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된 방문지역에 대한 용수관리 목표를 설정했다. c. 조직운영 그리고 조직이 직접적인 영향/통제를 행사하는 곳의 용수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d. 용수사용을 최소화하는 장비와 방식을 활용한다. e. 과거에 피해를 입지 않았던 수원(水源)에서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물을 확보하며, 해당 용수는 향후 환경흐름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f. 인근지역관광이 수원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고려한다. g. 용수절약 목표를 설정했다. h. 임직원과 관광객에게 용수 사용 최소화에 대해 안내한다.
D2 오염 저감	
D2.1 온실가스배출 <p>조직이 통제하는 모든 출처에서 발생하는 주요 온실가스배출을 파악하며, 가능한 경우 이를 산출하고 온실가스배출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실행한다. 조직의 잔여배출권 거래를 통한 상쇄를 독려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조직운영 그리고 조직이 직접적인 영향/통제를 행사하는 곳의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b. 관광객 1인/1박 기준 탄소발자국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c. 조직이 통제하는 모든 출처에서 매년 발생하는 주요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방지 및 감축 조치를 취한다. d. 상품·서비스 제공업체가 매년 배출하는 주요 온실가스의 배출 방지 및 감축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한다.

	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D2.2 운송 및 이동	<p>조직은 운송수요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고객, 직원, 공급업체가 그리고 조직운영 시 더 깨끗하고 자원 효율적인 대안을 이용하도록 적극 독려한다.</p> <p>a. 적절하고 실현가능한 경우 관광프로그램과 당일여행을 위해 가장 청정하고 자원효율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p> <p>b. 대체(기후친화적)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홍보한다.</p> <p>c. 투숙객과 임직원에게 대체 교통수단(예: 자전거 대여, 카셰어링, 픽업)을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p> <p>d. 더욱 지속가능한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접근가능한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p> <p>e. 지역공급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일상운영을 위한 교통수단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p>
D2.3 폐수	<p>증수(grey water)를 포함한 폐수를 효과적으로 처리해 재사용하거나, 안전하게 방류하여 지역주민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a. 조직은 주요 방문지역의 폐수처리방식을 인지하고 필요 및 실현가능한 경우 이를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도록 노력한다.</p> <p>b. 지역처리시설 또는 정부승인시설이 있는 경우, 조직 운영 그리고 조직이 직접적인 영향/통제를 행사하는 곳에서 발생한 폐수는 그 시설에서 처리한다.</p> <p>c. 적절한 지역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국제 폐수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폐수처리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해 지역주민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p>
D2.4 고형폐기물	<p>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폐기물을 측정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폐기물 감소가 불가능한 경우, 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한다. 잔여폐기물 처리는 지역주민 혹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a. 조직은 주요 방문지역의 폐기물 관리방식을 인지하고, 필요 및 실현가능한 경우 이를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도록 노력한다.</p> <p>b. 조직운영 그리고 조직이 직접적인 영향/통제를 행사하는 곳에 대한 고형폐기물 관리계획이 있다.</p> <p>c. 고형폐기물 관리계획은 음식물쓰레기 감소, 분리, 재 사용 혹은 재활용 조치를 포함한다.</p> <p>d. 폐기물을 정부가 운영/승인한 시설에서 처리하고 시설이 지역주민 혹은 환경에 악영향이 없음을 입증한다.</p> <p>e. 처리한 고형폐기물을 유형별로 측정하고 미전환 고형 폐기물의 최소화 목표를 설정했다.</p> <p>f. 고객, 임직원, 상품·서비스 제공업체에게 폐기물 최소화를 안내한다.</p>
D2.5 유해물질	<p>a. 유해물질 재고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를 보유하고 있다.</p>

<p>살충제, 페인트, 수영장 소독약품, 세제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무해한 상품이나 프로세스로 대체한다. 모든 화학약품 저장, 사용, 취급, 처리를 적절하게 관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더욱 친환경적인 대체품을 얻고자 조치를 취했다. c. 화학약품, 특히 대용량 화학약품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저장하고 취급한다. d. 방문객이 방문지역의 환경에 유해한 개인세면도구나 기타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p>D2.6 오염의 최소화</p> <p>조직은 소음, 불빛, 유출물, 침식, 오존 파괴물질이 야기하는 오염, 그리고 대기, 수질, 토양오염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실행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기준에 명시된 잠재적 오염원을 검토하고 파악했다. b. 기준에 명시된 잠재적 오염원을 모니터링한다. c. 기준에 명시된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한 오염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경우 이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다.

D3 생물다양성,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p>D3.1 생물다양성 보전</p> <p>조직은 조직의 부지를 적절히 관리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을 지원하고 이에 기여한다. 자연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자연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고 이를 복원하며 보전관리를 위해 배상적 분담금을 부담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조직이 방문지역의 자연보호구역과 생물다양성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b. 조직은 주요 운영/방문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며 이를 기록한다. c. 조직은 조직의 주요 운영/방문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현물이나 기타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기록한다. d.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부동산과 조직이 직접적인 영향/통제를 행사하는 곳을 적극 관리해 생물다양성 보전을 지원한다. e. 조직은 야생동식물과 서식지를 교란할 수 있는 활동을 인지하고 이를 경감한다. f. 교란 발생 시, 이를 배상한다. g. 관광객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한다. h. 조직은 조직의 주요 운영/방문지역에서 지역 NGO와 협력한다.
<p>D3.2 외래종</p> <p>조직은 외래종 도입 예방 조치를 취한다. 조경 및 복원 작업 시 재래종을 사용하고 특히 자연경관 조성 시 가능한 한 재래종을 사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조직이 소유·운영한 부지와 조직이 직접적인 영향/통제를 행사하는 곳의 외래종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b. 외래종 도입 혹은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한다. c. 외래종 박멸 및 통제 프로그램이 있다. d. 재래종 활용을 고려하기 위해 관광지 조경을 검토한다.
<p>D3.3 자연지역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조직은 관광객의 자연지역 방문에 대비, 현행 지침을 인지하고 준수한다.

<p>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관광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연지역 방문을 관리하고 흥보함에 있어 적절한 지침을 준수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관광지역 방문 시 그리고 관광객에게 정보 제공 시 지침을 활용한다. c. 조직은 특정한 관광지 방문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고 파악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보전기구와 협력한다. d. 조직은 해당지역의 가이드를 교육하고 활용하는데 참여하며, 이를 지원한다. e. 단체방문객의 규모, 빈도, 시기를 결정할 때 자연지역의 여력과 취약성, 그리고 자연지역에 가해지는 부담의 정도를 고려한다. f.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피드백을 적극 수렴하여 조치한다.
<p>D3.4 야생동물과 상호작용</p> <p>동물과 야생생태계의 생존능력 및 행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야생동물과의 접촉이(누적영향을 고려하여) 그들의 생활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책임있게 관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조직은 야생동물 관찰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에 대한 현행 지역, 국내, 국제 규제와 지침을 인지하고 준수한다. b. 야생동물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조직은 야생동물 관람을 포함한 야생동물과의 접촉에 대한 해당지역의 조례·지침 개발과 이행에 참여한다. c. 조직은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와 방문지역이 야생동물 관람을 포함한 야생동물과의 접촉에 대한 현행 지역, 국내, 국제 규제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d. 국제적으로 용인된 기준에 따라 또는 기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독립적인 야생동식물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적 접촉(특히 먹이주기)을 금지한다. e. 야생동물 교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f. 야생동물 복지에 대한 영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한다.
<p>D3.5 동물복지</p> <p>어떠한 야생동물종도 습득, 번식, 노획하지 않는다. 단, 국내 및 국제 법규에 따라 올바른 장비를 갖춘 공인된 전문가가 적절한 관리 활동을 위해 작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모든 야생동물과 가축류의 수용, 돌봄, 취급 시 가장 강력한 동물복지기준을 따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조직은 포획야생동물에 대한 법규 및 규제를 인지하고 준수한다. b. 포획야생동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광활동에 대한 현행 지침을 이행한다. c. 포획야생동물 담당자는 적법한 자격 및 경험을 보유한, 정식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d. 조직은 동물복지 관련 법규 및 규제를 인지하고 준수한다. e. 조직은 모든 서비스 제공업체와 방문지역이 포획야생동물 및 동물복지 관련 법규, 규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한다. f. 포획야생동물의 상태 및 수용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g. 가축의 상태 및 수용·취급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D3.6 야생동식물 채집 및 거래

야생동식물종을 채집, 소비, 전시, 판매, 거래하지 않는다. 단, 국내 및 국제 법규를 준수한 야생동식물종의 활용이 야생동식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 활동의 일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a. 조직은 야생동식물 채집 및 거래 관련 법규와 규제를 인지하고 준수한다.
 - b. 조직은 모든 서비스제공업체와 방문지역이 야생동식물 채집 및 거래에 대한 법규 및 규제를 준수하도록 한다.
 - c. 관광객과 가이드를 대상으로 야생동식물의 채집, 소비, 거래 관련 규제 그리고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명시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으로 제작한 불법상품/기념품 구입이 금지됨을 안내한다.
 - d. 사냥활동이 합법인 경우, 이를 과학적 근거에 의한 야생동식물 보전 방법의 일환으로 적절하게 관리하고 엄격하게 시행한다.
-